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2-281호**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전기·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환경부장관

2023년도 전기·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

2023년도 전기·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

대 상	2023년도
49개 품목 (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)	8.60kg/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